

인천지방법원

매각물건명세서

사건	2025타경507912 부동산강제경매			매각 물건번호	1	작성 일자	2026. 1. 12.	담임법관 (사법보좌관)	박인진	<u>전자서명완료</u>
부동산 및 감정평가액 최저매각가격의 표시		별지 기재와 같음		최선순위 설정	2025.2.28. 강제경매 개시 결정		배당요구종기	2025. 6. 4.		
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, 점유할 수 있는 기간, 차입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및 임차인이 있는 경우 배당요구 여부와 그 일자, 전입신고일자 또는 사업자등록신청일자와 확정일자의 유무와 그 일자										
점유자 성명	점유 부분	정보출처 구분	점유의 권원	임대차기간 (점유기간)	보증금	차입	전입신고일자·외국인등록(체류지변경신고)일자· 사업자등록 신청일자	확정일자	배당 요구여부 (배당요구일자)	
주택도시 보증공사 (임차인: 호진권)	전부	권리신고	주거 임차인	2021.1.22.~ 2023.7.21.	78,000,000		2021.1.22.	2021.1.4.	2025.2.26.	
호진권	전부	등기사항전 부증명서	주거 임차권자	2021.1.22.~	78,000,000		2021.1.22.	(1)2021.1.4. (2)2023.1.27.		
<비고> 주택도시보증공사(임차인:호진권):주택임차권자인 호진권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승계인으로서 신청채권자이며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일자는 이 사건 신청일임. 이 사건에서 임차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매수인에 대한 잔존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포기하고 주택임차권 등기의 말소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함.										
※ 최선순위 설정일자보다 대항요건을 먼저 갖춘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매수인에게 인수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,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는 주택·상가건물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보증금 전액에 관하여 배당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당받지 못한 잔액이 매수인에게 인수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										
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 매각으로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										
을구 순위 7번 주택임차권등기(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말소동의 확인서가 제출됨)										
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는 지상권의 개요										
비고란										

- ※1: 매각목적물에서 제외되는 미등기건물 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취지를 명확히 기재한다.
 2: 매각으로 소멸되는 가등기담보권, 가압류, 전세권의 등기일자가 최선순위 저당권등기일자보다 빠른 경우에는 그 등기일자를 기재한다.

부동산의 표시

2025타경507912

[물건 1]

1. 1동의 건물의 표시

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1-13
굿모닝힐타운
212동
[도로명주소] 인천광역시 서구 간촌로 28-12

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
4층 공동주택
1층 10.08㎡(주차장)
1층 100.72㎡(다세대주택 2세대)
2층 111.52㎡(다세대주택 2세대)
3층 91.29㎡(다세대주택 2세대)
4층 81.55㎡(다세대주택 2세대)

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

1층101호
철근콘크리트조
42.18㎡

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

토지의 표시 : 1.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701-13
대 227.8㎡
대지권의종류 : 1. 소유권
대지권의비율 : 1. 227.8분의 28.4

감정평가액		88,000,000	
회차	기 일	최저매각가격	매수신청보증금
1회	2026.03.13	88,000,000	8,800,000
2회	2026.04.15	61,600,000	6,160,000
3회	2026.05.18	43,120,000	4,312,000
4회	2026.06.24	30,184,000	3,018,400